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규복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3월 10일
발 의 자: 황규복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
김평남, 김혜련, 박기열,
박순규, 송도호, 송아량,
이영실, 이정인, 이종환,
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
전석기, 홍성룡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전문예술인법
인·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의 기준 일부를 기존의 공
연·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중심에서 운영 능력
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법인·단체
가 지정·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문 예술 법인·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2조제3항
제3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3항제3호 “공연·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·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”을 “공연·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·전시시설의 운영 능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) ①~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·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며,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. (생 략)</p> <p>3. <u>공연·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·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</u></p> <p>4.~6. (생 략)</p> <p>④~⑤ (생 략)</p>	<p>제32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공연·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·전시시설의 운영 능력</u></p> <p>4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